

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양승이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2. 26.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289호로 2024년 2월 8일 양송이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명시(안 제5조)
- 나.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조항 신설(안 제6조 및 별표 2)
- 다.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신설(안 제7조)
 -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및 전환된 연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- 라. 경조사특별휴가일수 정비(안 제8조 및 별표 3)
 -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특별휴가 부여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5조에서는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·실시하고, 연가신청 시에 공무원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연가일수 및 재직기간 기준 등이 확대되어 개정된(2023.7.18.시행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가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없으나 해당 조항이 침익적인 규정이 아닌 수익·시혜적 규정인 점, 추후 특수

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공무원과 함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- 안 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(2023.6.13.시행)제4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고, 이와 함께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10에 근거하여 전환된 연가를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,
- 별표 3에서는 기존 배우자의 출산 시 일괄적으로 휴가일수를 10일 부여했던 것을 개정(2023.10.19. 시행)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의거 단서를 신설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더 많은 돌봄이 수반되는 “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” 휴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조항 중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,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등 우리 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무원의

공·사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
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
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 25., 2021. 11. 30.>

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4. 25., 2018. 12. 18., 2020. 10. 20., 2021. 11. 30.>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신설 2017. 4. 25., 2021. 11. 30., 2021. 12. 31.>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

2.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13.>

제7조의10(연가의 저축)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·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23. 6. 13.>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3. 7. 18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